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53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김동아 · 박해철 · 임미애
문진석 · 임문영 · 문금주
이상식 · 안도걸 · 박주민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 아동학대 ·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 ·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중개 · 보조해 주는 인권보호제도이며,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 피고

인의 방어권 보장을 기본원리로 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의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 권리와 함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7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의7 및 제24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4조의7(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의자, 그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

조력인은 피의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공소청 및 지청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
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
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자격,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4조의8(준용규정) 제279조의8은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한다.

제276조의3 및 제27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6조의3(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피
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신문을 위
하여 직권이나 피고인,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
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고인,

그의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6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8은 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244조의 7 및 제2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4조의7(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u> <u>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의자, 그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u>

③ 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의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공소청 및 지청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

<신 설>

<신 설>

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자격,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 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4조의8(준용규정) 제279조의8
은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과정
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한다.

제276조의3(장애인에 대한 진술
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
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
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
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고인, 그의 법정대
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
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신
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
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고인, 그의 법정대리인 및 변

<신 설>

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6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8은 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한다.